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상사례 공유

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이상사례 중 일부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.

(해당 사례는 경기 광진약국 조세현 약사님의 보고에 대한 평가 내용입니다.)



> 둘라글루타이드 투여 후 급성췌장염 이상사례 발생



이상사례보고접수내용

나이·성별	57세 여성
현재 병력	제2형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
과거 병력	N/A
진료 과목	내과
투여 목적	혈당 조절을 위해 투여
의심 약물	둘라글루타이드 0.75mg(dulaglutide)
병용 약물	티옥트산 600mg(thioctic acid), 페노피브레이트 160mg(fenofibrate), 피타바스타틴 2mg (pitavastatin), 메트포르민염산염 500mg (metformin hydrochloride), 인슐린글라진 10.91mg/mL(insulin glargine)
이상사례	급성췌장염
투약 시작일	약 2-3개월 전
발현 시점	최근(약물 복용 약 2-3개월 후)
조치 사항	둘라글루타이드 처방을 중지하였으며 인슐린글라 진을 증량함
이상사례 경과	N/A
사후 조치	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이상사례 보고함

이상사례보고상세내용

● 제2형 당뇨병,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57세 여성이 약 2-3개월 전인 6월부터 둘라글루타이드(트루리시티®) 0.75mg(dulaglutide) 투여를 시작했습니다. 이후 심한 울렁거림을 느껴 병원 진료 시상담하였으나 울렁거림은 둘라글루타이드 투여 후 나타날 수 있는흔한 이상반응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

이후 환자는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고 췌장점액성낭종으로 악성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. 환자는 주변으로부터 둘라글루타이드 투여 후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둘라글루타이드를 급성췌장염 발병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

현재 환자는 **둘라글루타이드 투여를 중단**하였으며 인슐린글라진 (insulin glargine)을 증량한 상태입니다.

평가의견및참고사항

■ 인과성 평가

-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인과성 평가를 '가능함(possible)'으로 하였습니다.
- 1. WHO-UMC 평가기준 '가능함(possible)'입니다.
- ① 약물투여와 이상사례 발생 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
- ② 질병이나 다른 약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
- ③ 약물 투여 중단 시 및 재투여 시의 임상 반응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'가능함'으로 평가합니다.
- 2. [가능함] **둘라글루타이드(dulaglutide)** 투여 후 드물게 급성췌장 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GLP-1 유사체는 선방세포 비대, 염증성

사이토카인 유도, 췌장 혈관 손상 유발 등의 메커니즘으로 췌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한 후 환자에게서 지속 적인 중증의 복통을 보이는 췌장염 징후 및 증상이 있는지 신중하게 관찰해야하며 췌장염이 의심되면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합 니다.

3. [가능함] <u>페노피브레이트(fenofibrate)</u> 복용 후 췌장염 발생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. 이는 중증의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의 치료 실패, 췌장 효소가 증가한 환자 또는 담관 폐색을 동반하는 담도 결석, 담즙 침전물 형성 등에 의한 2차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.

■ 상세 사항

둘라글루타이드(dulaglutide)는 글루카곤양 펩티드-1 유사체/수용체 작용제(glucagon like peptide-1, 이하 GLP-1 유사체)입니다.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소화되어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인슐린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인크레틴(incretin)이라는 장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인크레틴은 크게 GLP-1과 GIP(glucose-dependent insulintropic polypeptide, 과거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)로 나눌 수있으며 이중 GLP-1이 제2형 당뇨병에 효과가 있습니다.

GLP-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식후 혈당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. GLP-1은 DPP-4(dipeptidyl pept-idese-4)라는 효소에 의해 효과가 감소하므로 GLP-1 유사체와 DP P-4 억제제가 인크레틴을 이용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.

특히 **둘라글루타이드 주사제는 1주일에 1회 투여**하므로 편리하여 복약이행도가 높습니다. 저혈당 위험이 낮으며 체중 감소에도 도움 이 됩니다. 이러한 장점때문에 둘라글루타이드의 사용량은 지속적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동물실험에서 갑상선 C세포 종양 발생률을 증가시켰으므로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. 사용 시 환자에게 갑상선 수질암의 위험을 알려야 하며 목의 종괴, 연하곤란, 호흡곤란, 지속적인 쉰 소리 등 갑상선 암의 증상에 대해 서도 알려야 합니다.

또한 이 약의 투여 시작 후 환자에게서 중증의 복통을 보이는 췌장 염의 징후 및 증상이 있는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. 복통의 경우 구토를 동반하기도 하며 등통증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. 췌장염이 의심되면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췌장염이 확진되면 다시 투여해서는 안됩니다. 과거에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항당뇨 치료제를 고려하도록 합니다.

둘라글루타이드는 사이토카인 유도, 췌장 혈관 손상 유발 등의 메커 니즘으로 췌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한 후 환자에게서 지속적인 중증의 복통을 보이는 췌장염 징후 및 증상이 있는지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.

또한 투여 후 매우 흔하게(≥1/10)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저혈당(경구 혈당강하제 병용 시), 구역, 설사, 구토, 복통 등이 있었습니다.

• 해당 환자의 급성췌장염 발생 관련 추가 고려 사항

1. 제2형 당뇨병과 급성췌장염

췌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복수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급성췌 장염 발생 가능성이 2-3배 높아집니다.

이와 같이 췌장염과 제2형 당뇨병은 일부 위험 요인이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급성췌장염이 나타나는 경

우 그 원인을 기저질환과 명확히 분리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.

2. 이상지질혈증과 급성췌장염

급성췌장염의 발병원인은 주로 알코올과 담석입니다. 그러나 고중 성지방혈증 또한 드물지만 급성췌장염의 발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중성지방이 1,000mg/dL 이상이 되면 급성췌장염 발생률이 증가합니다.

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**과도한 중성지방이 췌장의 리파이제에 의해 자유 지방산으로 대사되어 췌장세포 손상과 허혈을 유발**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동물 실험 결과 췌장 모세혈관에 존재하는 높은 점도의 중성지방이 췌장을 허혈상태로 만들었으나 이때 다른 기관에서는 허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
해당 환자의 경우 이상지질혈증이 급성췌장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경우 제2형 당뇨병 및 당뇨병 치료제로 인한 급성췌장염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문헌 조사

● <u>인크레틴 관련 당뇨병 치료제는 GLP-1 유사체와 DPP-4 억제</u> 제가 있습니다. 각각 2005년(엑세나타이드(exenatide)), 2006년(시타 글립틴(sitagliptin))에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점차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.

DPP-4 억제제는 (소장에서 분비되는) 인크레틴을 빠르게 분해하여 활성을 잃게하는 효소인 DPP-4의 작용을 저해하여 인크레틴의 작용시간을 연장시키는 반면 GLP-1 유사체는 GLP-1 수용체를

자극하여 약효를 나타냅니다. 특히 GLP-1 유사체는 위배출을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므로 체중 감소와 연결됩니다. GLP-1 유사체 복용 후 흔히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2-4주 후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.

드물지만 인크레틴 관련 제제의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급성췌장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인크레틴 관련 제제의 시판 후 조사에서 급성췌장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FDA는 라벨에 경고를 추가하였습니다. 일부 코호트 조사에서 인크레틴 관련 제제의 급성췌장염 발생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.

초기에 급성췌장염 위험 증가와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물은 D PP-4 억제제인 <u>시타글립틴</u>과 GLP-1 유사체인 <u>엑세나타이드</u>였습니다. 급성췌장염은 인크레틴 관련 제제의 흔한 이상반응으로 여겨졌으며 <u>GLP-1이 외분비성 췌장에 전염증/증식성(proinflammatory/proliferative)</u> 작용을 하여 급성췌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을 때인크레틴 관련 제제, 특히 GLP-1 유사체는 급성췌장염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.

한편 GLP-1 유사체인 리라글루타이드(liraglutide)와 급성췌장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. 급·만성췌장염병력이 없는 5,358명(1,723명은 정상혈당, 2,789명은 당뇨 전단계, 846명은 제2형 당뇨병)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3,302명에게 리라글루타이드 3.0mg, 모두 당뇨병 환자로이루어진 211명에게 리라글루타이드 1.8mg, 1,845명에게 위약을투여한 후 56주 동안 이들의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활성 및 급성췌장염 발병에 대해 관찰하였습니다. 결과적으로 리라글루타이드 3.0

mg 투여군은 위약군보다 아밀라아제 평균 농도가 7%, 리파아제 평균 활성 수준이 31% 증가하였으며 리라글루타이드 1.8mg 투여군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. 특히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농도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 상승했으며 약물 중단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.

리라글루타이드 3.0mg 투여군 중 12명에게서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는데 9명은 약물투여기간 중, 3명은 약물투여기간이 끝난 후 발병하였습니다. 반면 위약군에서는 1건의 급성췌장염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. 급성췌장염이 발생한 12명 중 5명에게서 담석이 발견되었으며 아밀라아제/리파아제 증가와 급성췌장염은 관련이 없었습니다.

GLP-1 유사체가 급성췌장염을 발생시키는 원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, 그 중 한 가지는 <u>담석</u>과 관련된 것입니다. <u>GLP-1은 위장관 움직임을 억제하므로 쓸개 및</u> 쓸개관의 운동성 또한 억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<u>담석이 생성</u>될 수 있습니다. 담석은 급성췌장염의 주된 발병 원인 중 하나입니다.

[Yoshifumi Saisho. (2018). Incretin-based therapy and pancreatitis: accumulating evidence and unresolved questions. *Ann Transl Med.* 2018 Apr; 6(7): 131. doi: 10.21037/atm.2018.02.24]

둘라글루타이드는 1주일에 1회 투여하는 편리한 당뇨병 치료제로서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. 둘라글루타이드의 효능과 안전성은 다른 GLP-1 유사체와 비슷합니다. 둘라글루타이드는 당화 혈색소(A1c), 공복 및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고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제2형 당뇨병의 1,2,3차 치료제로 사용됩니다. 또한 β-세포 기능을 개선시키고 혈압 강하, 지질 수준 개선 등 심혈관계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둘라글루타이드는 다른 GLP-1 유사

<u>체에 비해 저혈당 위험이 낮지만 일시적인 위장관계 이상반응 및 췌</u> 장염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다른 GLP-1 유사체와 동일하게 존재합 니다.

췌장염은 모든 인크레틴 관련 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2013년 3월 미국 FDA는 이 제제들의 췌장염 위험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. 이 발표는 엑세나타이드와 시타글립틴의시판 후 조사에서 보고된 급성췌장염 사례와 인구기반의 사례-대조연구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.

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메타 분석들에서 <u>인크레틴 제제와 급성췌</u> 장염 발생과는 큰 관련성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의 수도 많지 않으므로 인크레틴 제제와 급성췌장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합니다. 또한 <u>제2형 당뇨병 자체로 인해 급성췌장염</u>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메타분석 결과 <u>상대위험도(relative risk, RR)는 1.8(P=0.000)</u>이었습니다.

FDA는 안전성 정보 발표와 함께 이들 제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GLP-1 유사체 약물들의 시판 후 조사에서 췌장염 및 갑상선 수질 암종에 대한 위험 평가와 완화 전략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.

[Edwards, K., & Minze, M. (2015). Dulaglutide: an evidence-based review of its potential in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. *Core Evidence*, 11. doi:10.2147/ce.s55944]

•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67세 백인 남성은 3개월 전까지 10년 동안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해왔습니다. 환자는 3개월 전 GLP-1 유사체인 릭시세나타이드(lixisenatide) 10mg을 1일 1회 추가 투여하였고 이후 진행성 복부 통증과 구토가 나타났습니다. 환자의 혈중 리파아제 및 아밀라아제 농도는 상승하였고 초음파와 단층촬

영을 통해 <u>췌장과 췌장주변의 지방세포 염증</u>을 발견하였습니다. GLP-1 유사체 투여를 중지하고 지지요법(supportive treatment)을 시행하자 환자는 5일 후 회복되었습니다.

인크레틴(췌장의 β -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여 혈당을 낮추는 물질)은 췌장염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<u>미국 FDA에서</u>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<u>메타분석 결과 인크레틴 관련 제제와 췌장염 또는 췌장</u>암의 관련성은 작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GLP-1 유사체의 뛰어난 효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췌장염 위험은 약물 선택 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GLP-1 유사체에 의한 급성췌장염은 일반적인 췌장염 증상과 다소 다르며 자기제한적인 특성(자발적으로 치유됨)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지하여 보고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GLP-1 유사체와 급성췌장염 발생 관련성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약물감시활동과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[Bogdan Augustin Chis & Daniela Fodor. (2018). Acute pancreatitis during GLP-1 receptor agonist treatment. A case report. *Clujul Med.* 2018; 91(1): 117-119. Published online 2018 Jan 15. doi: 10.15386/cjmed-804]

WHO-UMC 인과성 평가 기준

인과성 용어 Causality term	평가 기준 Assessment criteria - all points should be reasonably complied
확실함 Certain	 ▷ 비정상적 사례 또는 검사치, 의약품 투여와 시간적 선후관계 성립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, with plausi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▷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음 Cannot be explained by disease or other drugs ▷ 의약품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 Response to withdrawal plausible (pharmacologically, pathologically) ▷ 약물학적 또는 현상학적으로 결정적 사례 Event definitive pharmacologically or phenomenologically (i.e. an objective and specific medical disorder or a recognised pharmacological phenomenon) ▷ 의약품의 재투여 시 양성반응 Rechallenge satisfactory, if necessary
상당히 확실함 Probable/Likely	 ▷ 비정상적 사례 또는 검사치, 의약품 투여와 시간적 선후관계 성립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, with reasona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▷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의 가능성 적음 Unlikely to be attributed to disease or other drugs ▷ 의약품 투여중단 시 임상적으로 타당한 반응 Response to withdrawal clinically reasonable ▷ 의약품의 재투여 정보 없음 Rechallenge not required
가능함 Possible	 ▷ 비정상적 사례 또는 검사치, 의약품 투여와 시간적 선후관계 성립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, with reasonable time relationship to drug intake ▷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음 Could also be explained by disease or other drugs ▷ 의약품 투여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함 Information on drug withdrawal may be lacking or unclear
가능성 적음 Unlikely	 ▷ 비정상적 사례 또는 검사치, 의약품 투여와 시간적 선후관계가 적절하지 않음 (불가능한 것은 아님)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, with a time to drug intake that makes a relationship improbable (but not impossible) ▷ 다른 의약품이나 질환으로 타당한 설명이 가능함 Disease or other drugs provide plausible explanations
평가 곤란 Conditional/ Unclassified	 ▷ 비정상적 사례 또는 검사치 Event or laboratory test abnormality ▷ 적정한 평가를 위해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거나 More data for proper assessment needed, or ▷ 추가 자료를 검토 중임 Additional data under examination
평가 불가 Unassessable/ Unclassifiable	 ○ 이상반응을 암시하는 보고 Report suggesting an adverse reaction ○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상충되어 판단할 수 없거나 Cannot be judged because information is insufficient or contradictory ○ 자료를 보완하거나 확인할 수 없음 Data cannot be supplemented or verified